

사업명	지원대상	주요 내용	담당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근로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 휴직요건을 갖추고 무급휴업·휴직(90일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 평균임금의 50% 이내 지원(연 180일 한도) <특별업종>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후 가능 <일반업종>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후 가능 ※ 다만, 특별·일반업종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즉시 무급휴업 가능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32-460-4701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사업주/ 근로자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무급휴직(30일 이상) 실시에 대한 인건비 지원 (월 50만원, 90일 한도) <특별업종> 유급휴업 없이 즉시 무급휴직 가능 <일반업종>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후 무급휴직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32-460-4701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주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 (50%) 지원	노사상생지원과 032-460-4561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주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 (1억원 한도)	근로복지 공단 1588-0075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사업주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할 경우 인건비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 금액의 150%(대기업 100%)' 지원 <특별업종 훈련비> 기준단가의 (우선지원) 150%, (대규모기업) 90~100% <일반업종 훈련비> 기준단가의 (우선지원) 90~100%, (대규모기업) 40~60%	산업인력 공단 032-820-8600
실업급여	근로자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 사정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120~27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032-460-4701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 지원 (임금체불생계비 1인당 1천만원 등, 금리 연 1.5%)	근로복지 공단 1588-0075

<p><b>직업훈련 생계비 대부</b></p>	<p>근로자 등 (비정규직, 전직 실업자 등)</p>	<p>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고, 비 정규직, 전직실업자 등(가구 연간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대부 지원(월 200만원, 연 1%) &lt;특별업종&gt; 2천만원 한도 &lt;일반업종&gt; 1천만원 한도</p>	<p>근로복지 공단 1588-0075</p>
<p><b>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이자 융자</b></p>	<p>사업주</p>	<p>코로나19 피해 30인 미만 제조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소속근로자의 2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천만원~최대 1억원 이내 무이자 융자</p>	<p>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032-260-0621~4</p>

## 참고 1

#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요 안내

### 1.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 (사업개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요건)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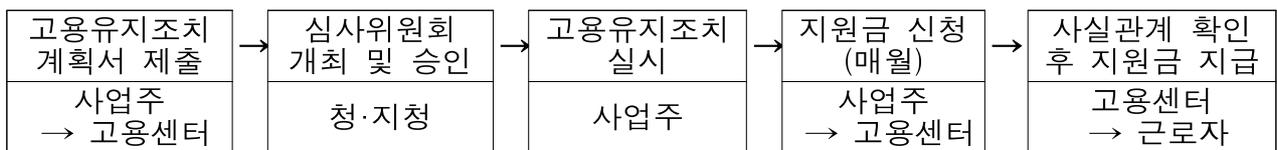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전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 (지원금액)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 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지원금)

- (지원절차)



### 2.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특별고용지원업종) '20.4.27 ~ 9.15, (일반업종) '20.7.1~12.31 (6.15부터 신청 접수)

#### <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 프로그램 >

특별고용 지원업종	일반절차	⇒	유급휴업 1개월 실시	⇒	무급휴직 실시 (30일 이상)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		즉시 무급휴직 실시 (30일 이상)	최대 90일 월 50만원
일반업종	일반절차	⇒	유급휴업 3개월 실시	⇒	무급휴직 실시 (90일 이상)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 실시	⇒	무급휴직 실시 (30일 이상)	최대 90일 월 50만원

## □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  
\* (勞)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 □ 지원요건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고량 증가(50%), 생산량 감소(15%), 매출액 감소(15%)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 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준용
- '20.1.1~12.31. 중에 노사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합의  
\*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삭감 등의 고용유지조치
-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 근로자 지원을 위한 경우라면 노사가 합의한 용도를 폭넓게 인정

## □ 지원내용

-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月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최대 6개월
-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영 19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영 21조의3) 중복 시 지급 제외

## □ 사업수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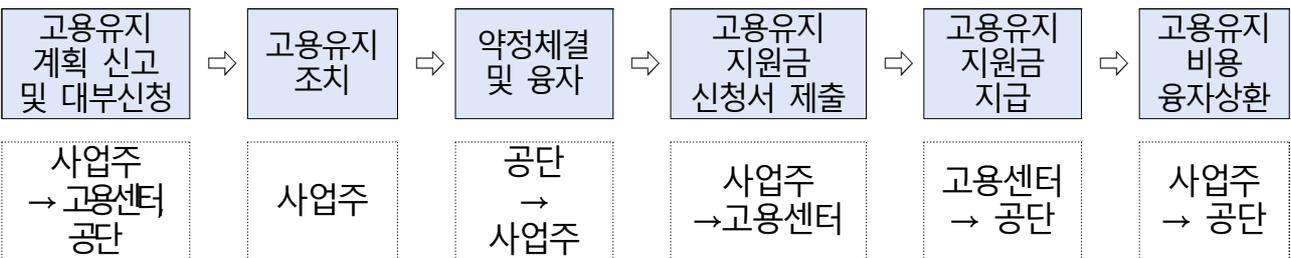
-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여 매월 단위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사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지원내역 등 결정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
  -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2. 추진 방안

-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
  - 대부액: 1개사 1회 최저 1백만원 ~ 최대 1억원
  - 대부조건: 연리 1.5%,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체이율 연 9%
- (지원절차) 매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접수 후 대부 실행(근복공단)



- (상환방식)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공단 지정계좌로 송부되어 상환 완료
  - \* 대부액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금액은 용자 조건에 따라 사업주 직접 상환
- (시행기간) '20.7.30.(예정) ~ 12.31.까지 한시적 시행
  - \* 신청접수 8.3.이후부터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은 8.17이후 가능)
- (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 □ 개요

-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지원

## □ 훈련 실시 대상

-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 채용예정자, 구직자, 다른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유급휴가 요건 등

-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인 사업주)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 (상기 미해당 사업주)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 □ 지원내용

-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을\*
  -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1,000인 미만 기업 60%, 1,000인 이상 기업 40%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기업 100%, 1,000인 이상 기업 90%
- (임금) 소정훈련시간 × 최저시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체인력 임금)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다만, 사업주가 채용일 부터 훈련종료일까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1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만 지원
-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식비는 1일 3,300원,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 \*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월 330,000원 한도로 지원
  - \*\* 숙식비가 지원될 경우 식비는 미지원

**참고 5**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용자**

구분	내 용	
	종 류	대상 및 조건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생활 안정자금 용자</li> <li>○ 임금 감소 및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비 용자</li> </ul>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부터</li> </ul>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li> <li>○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8호)</li> </ul>
용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이상 근속 중</li> <li>*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li> <li>○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8.1~12.31.까지 3인가구 중위소득, '20년 388만원)</li> <li>*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li> </ul>
	⑥임금감소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상 근속 중</li> <li>○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li> <li>○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8.1~12.31.까지 3인가구 중위소득, '20년 388만원)</li> </ul>
	⑦소액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이상 근속 중</li> <li>*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li> <li>○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li> <li>○ 임금이 감소한 용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8.1~12.31.까지 3인가구 중위소득, '20년 388만원)</li> </ul>
	⑧임금체불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현재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li> <li>* (건설일용노동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li> <li>○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체불</li> <li>* (건설일용노동자) 5일분 이상 체불('20년 651,320원)</li> <li>○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4인가구) 이하 ('20년 5,700만원)</li> <li>* (건설일용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li> </ul>
용자 한도	①의료비, ②장례비	○ 1,000만원
	③혼례비	○ 1,250만원
	④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소액생계비	○ 200만원('20.5.1~12.31. 500만원)
	⑦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 임금감소액 범위('20.5.1~12.31. 2,000만원)
	⑧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 임금체불액 범위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20.7.1~12.31. 3,000만원)		
용자 금리		○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상환		○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개요

- (목적)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지원
- (지원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소득요건)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20년>
- (지원수준) 월 단위 300만원(1인당 2,000만원내) 한도 <~20년>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기간) 훈련기간 ~ 훈련 종료 후 90일까지 지원 <~20년>

□ 지원 절차

